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2호로 2023년 11월 9일 임헌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산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1. 10. ~ 11. 1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민족통일협회의회의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지원사업 등)는 민족통일협회에서 추진하는 통일교육, 홍보 및 구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는 민족통일협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1981년 설립되어 국내 최대규모의 전국 조직을 갖춘 민간통일운동단체인 영등포구 민족통일협회가 추진하는 통일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통일교육 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통일교육 지원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